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25
----------	-------

발의연월일 : 2026. 1. 14.

발 의 자 : 차지호 · 신정훈 · 박 정
홍기원 · 채현일 · 임호선
김현정 · 안호영 · 황명선
정을호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선거 과정에서 딥페이크 등 정교한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및 여론 조작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기술 발전 속도에 비추어 규제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규제 방식을 ‘전면 금지’에서 ‘투명성 확보 및 유통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인위적 정보 증폭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자 함.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정보 유통의 시스템적 관리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벌 및 과태료 규정을 연동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편집된 콘텐츠를 유포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82조의8제1항).
- 나. 인공지능 생성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유권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와 자동화된 수단 또는 알고리즘의 인위적 증폭을 통해 허위 또는 오도될 수 있는 정보를 대규모로 확산시키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2조의8제2항).
- 다. 풍자·패러디 등 예술적 표현이나 언론 보도의 경우 표시의무 등의 예외를 인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함(안 제82조의8제3항).
- 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자동화된 계정 등에 의한 정보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관리조치를 할 노력의무를 부여함(안 제82조의9).
- 마.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조직적·고의적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표시의무 위반이나 플랫폼의 관리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 제재체계를 마련함(안 제250조의2 및 제261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8의 제목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인공지능 생성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편집된 영상·음성·이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콘텐츠(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한다)를 제작·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유권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후보자, 정당 또는 선거의 공정성에 관하여 유권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유포하는 행위
2. 자동화된 계정, 조직적·계획적 방식 또는 정보유통 알고리즘의 인위적 증폭을 통하여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 관한 허위 또는

오도될 수 있는 정보를 선거인에게 대규모로 확산시키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풍자·패러디 또는 예술적 표현으로서 전체적인 맥락상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언론의 보도를 목적으로 한 표현으로서 전체적인 맥락상 인공지능 생성물임이 명백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표시의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증폭 행위의 세부 판단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9(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유통의 관리)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해당 플랫폼을 통하여 제82조의8제2항의 금지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자동화된 계정 차단,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 합리적 관리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의 기준 및 권고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0조의2(인공지능 생성물 이용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
게 할 목적으로 제8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
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인공지능 생성물 또는 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8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인공지능 생성물 또는 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허
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가 제2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
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8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 플랫폼 운
영자

4.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아니
하고 제작·유포한 자. 다만, 영리 목적이 없거나 단순 과실로 인

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 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 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 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 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 ·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 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 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	제82조의8(인공지능 생성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 또는 선거 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공 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 편집된 영상·음성·이미지 또 는 이에 준하는 콘텐츠(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한다) 를 제작·유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생성 물임을 유권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 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후보자, 정당 또는 선거의 공정성에 관하여 유 권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유포하는 행 위

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2. 자동화된 계정, 조직적·계획적 방식 또는 정보유통 알고리즘의 인위적 증폭을 통하여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에 관한 허위 또는 오도될 수 있는 정보를 선거인에게 대규모로 확산시키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풍자·패러디 또는 예술적 표현으로서 전체적인 맥락상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2. 언론의 보도를 목적으로 한 표현으로서 전체적인 맥락상 인공지능 생성물임이 명백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표시의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증폭 행위의 세부 판단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9(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 설>

정보유통의 관리)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해당 플랫폼을 통하여 제82조의8제2항의 금지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자동화된 계정 차단,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 합리적 관리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의 기준 및 권고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0조의2(인공지능 생성물 이용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제8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인공지능 생성물 또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는 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82조의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인공지능 생성물 또는 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가 제2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8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합

2. ~ 4.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3. (생략) 4.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u>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 등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u> 4의2.·5. (생략) ④ ~ ⑫ (생략)	<u>리적인 관리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u>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③ ----- ----- ----- -----.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u>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작·유통한 자. 다만, 영리 목적이 없거나 단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u> 4의2.·5. (현행과 같음) ④ ~ ⑫ (현행과 같음)
---	--